

의안번호	제 491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의회 운영 기준 반영
-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신설 (안 제2조)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제2항제10호 및 제14호, 제15호)
 - 공군 제3710부대장 및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이 퇴임 등에 따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봄
-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 세분화(안 제3조제3항)
 - 기존 총무담당·비상기획담당간사, 심리전담당간사를 포함 작전담당 담당간사, 정보담당간사, 경찰담당간사, 예비군담당간사, 소방담당 담당간사 신설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의2)
 -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되고,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사람으로 구성
 -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에 부칠 안전의 사전 심의,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,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-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(안 제4조)
-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5조)
-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)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(이하 “취약지역”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 대비책(지역주민,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홍보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)
3. 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, 훈련의 지원 대책
 - 가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 - 나. 향도 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들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 대책
 - 다. 방위지원본부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라.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, 통행 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

마. 주민신고조직의 확립 및 홍보, 주기적인 훈련에 관한 사항

바. 내륙 취약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설, 통신망 확보, 주민신고 조직, 주민홍보,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

사.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결정
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, 운용 및 지원 대책

가. 지역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

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·경 간의 유대강화

다. 향토예비군 장비·물자확보를 위한 예산지원

6. 취약지역 대비책

7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제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공군 제3710부대장

14. 충북남부보훈지청장

15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. 이 경우 특정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달리 위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총무담당·비상기획담당간사 : 재난안전실장

가.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·운영 지원

나.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 교육

2. 심리전담당간사 : 공보관

가.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수행

나.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

3. 작전담당간사 :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

가. 협의회의 작전업무 안건상정

나.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·시행 및 대비책 수립

다.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 방안 분석 및 건의

4. 정보담당간사 :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대공수사처장, 제606국군기무부대 방첩과장, 제37보병사단 정보참모

가.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 지원 및 조정

나.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용

5. 경찰담당간사 :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

가. 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경찰첩보, 치안상황, 불순분자 검문 검색활동 지원

6. 예비군담당간사 : 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,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

가.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업무

나.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

7. 소방담당간사 : 소방본부장

가. 구조 및 구급에 관한 사항

나. 긴급 복구 지원 등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충청북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
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
3.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·재정지원반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 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·전산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,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

상 1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
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실·국·본부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부대표자로 한다.

제5조를 제7조로 하고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) 「통합방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 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전(交戰) 등으로 인명·신체의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구역
2.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
3.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

제6조(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) 「통합방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피명령의 방법

- 가. 텔레비전·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
- 나.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
- 다. 전단 살포
- 라.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
- 마. 타종(打鐘), 경적(警笛) 또는 신호기(信號旗)의 게양

2.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

가.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(충북지방경찰청장, 제37보병사단장)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
나.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, 제1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다.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·관·군·경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 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.

라.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·도발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5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통합방위법」 제17조제3항”을 “「통합방위법」 제22조제3항”으로, “취약지역 대비책”을 “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<신설>	<p>제2조(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)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(이하 “협의회” 라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(이하 “취약지역” 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 2.통합방위 대비책(지역주민,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홍보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) 3.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.통합방위작전, 훈련의 지원 대책 <p>가.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</p> <p>나.향토 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들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 대책</p> <p>다.방위지원본부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	<p>라.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,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</p> <p>마.주민신고조직의 확립 및 홍보,주기적인 훈련에 관한 사항</p> <p>바.내륙 취약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설, 통신망 확보, 주민신고 조직, 주민홍보,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</p> <p>사.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결정</p> <p>5.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, 운용 및 지원 대책</p> <p>가.지역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</p> <p>나.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·경간의 유대 강화</p> <p>다.향토예비군 장비·물자확보를 위한 예산지원</p> <p>6.취약지역 대비책</p> <p>7.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<u>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는-----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육군 제1987부대장</u></p> <p>11.~13(생략)</p> <p>14.(<u>신설</u>)</p> <p>15.(<u>신설</u>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가. <신설></p> <p>나. <신설></p> <p>2.(생략)</p> <p>가. <신설></p> <p>나. <신설></p>	<p>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<u>협의회</u>는-----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공군 제3710부대장</u></p> <p>11.~13.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충북남부보훈지청장</u></p> <p>15.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. 이 경우 특정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달리 위촉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<u>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·운영 지원</u></p> <p>나. <u>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 교육</u>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<u>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 수행</u></p> <p>나. <u>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</u></p>

현행	개정안
3.~ 6. <신설>	<p>3.작전담당간사 :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</p> <p>가.협의회외의 작전업무 안전상정 나.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·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.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 방안 분석 및 건의</p> <p>4.정보담당간사 :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대공수사처장, 제606기 무부대 방첩과장, 제37보병사단 정보참모</p> <p>가.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 지원 및 조정 나.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용</p> <p>5.경찰담당간사 :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</p> <p>가.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.경찰첩보, 치안상황, 불순분자 검문 검색활동 지원</p> <p>6.예비군담당간사 : 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, 충북지방병무청 동원 관리과장</p> <p>가.예비군 육성 및 운용업무</p>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<신설>	<p>나.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</p> <p>7.소방담당간사 : 소방본부장</p> <p>가.구조 및 구급에 관한 사항</p> <p>나.긴급 복구등 지원</p> <p>제3조의2(충청북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의 사전심의 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.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<p>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생략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분야별 지원반은 -----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<u>4인 이상 9인 이하의</u> 반원으로 편성한다.<개정 2004. 12. 31></p> <p>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한 <u>국·본부장급</u>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<u>대표자</u>로 한다.<개정 2006. 12. 22></p> <p>⑥(생략)</p> <p>제5조 <신설></p>	<p>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4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분야별 지원반은 -----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<u>4명 이상 13명 이하의</u> 반원으로 편성한다.<개정 2004. 12. 31></p> <p>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한 <u>실·국·본부의 과장급</u>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<u>부대표</u>자로 한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) 「통합방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 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전(交戰) 등으로 인명·신체의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구역 2.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<신설></p>	<p>요구되는 구역</p> <p>3.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</p> <p>제6조(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) 「통합방위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대피명령의 방법</p> <p>가.텔레비전·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</p> <p>나.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</p> <p>다.전단 살포</p> <p>라.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</p> <p>마.타종(打鐘), 경적(警笛) 또는 신호기(信號旗)의 계양</p> <p>2.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</p> <p>가.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(충북지방경찰청장, 제37보병사단장)은 주민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</p> <p>나.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) 「통합방위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<u>대비책에 포함</u> 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8. 7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8조 <신설></p>	<p>대피구역을 결정하고, 제1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대피 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 명령을 집행 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.</p> <p>다.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 지휘관은 민·관·군·경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 요소를 이용하여 대피 구역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.</p> <p>라.대피 구역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·도발 행위에 이용 할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취약지역 <u>통합방위</u>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「통합방위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<u>통합방위대비책의 필요</u>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통합방위법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시·도 협의회“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 <개정 2013.3.22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“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“취약지역“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 대비책
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5.21.]

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
②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“각 통합방위 지원본부“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5.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1.]

제16조(통제구역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,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·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·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2.>

1.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
 2. 적의 침투·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·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1.]
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0조로 이동 <2009.5.21.>]

제22조(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·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교통·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(奧地) 또는 벽지(僻地)
2.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

운 지역

3. 적이 저공(低空)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(江岸)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1.]

[제17조에서 이동 <2009.5.21.>]

제17조(대피명령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(이하 “대피명령“이라 한다)은 방송·확성기·벽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1.]
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<2009.5.21.>]

□ 통합방위법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“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8.20., 2014.11.19., 2015.1.6.>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관서의 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“지역실무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2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11.17.]
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09.11.17.>]

제17조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)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(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

2.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
3. 지역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

[전문개정 2009.11.17.]

[제13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<2009.11.17.>]

제18조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)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·재정 동원, 산업·수송·장비 동원, 의료·구호, 보급·급식, 통신·전산,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, 읍·면·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·면장·동장이 된다.

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·읍·면·동의 주사무소에 둔다.

[전문개정 2009.11.17.]
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<2009.11.17.>]

제28조(대피명령의 방법) 법 제17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

1. 텔레비전·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
2.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
3. 전단 살포
4.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
5. 타종(打鐘), 경적(警笛) 또는 신호기(信號旗)의 게양

[전문개정 2009.11.17.]

[제21조에서 이동,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<2009.11.17.>]

제29조(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·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,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

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·관·경·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.

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의 침투·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1.17.]

[제22조에서 이동,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<2009.11.17.>]

제34조(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)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“이란 해역,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.

② 지역군사령관,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,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·분석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, 시·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1.17.]

[제27조에서 이동 <2009.11.17.>]

입법 예고문

충청북도 공고 제 2016 - 호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□ 자치법규명 :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□ 개정이유
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15. 1.16) 등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

□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신설 (안 제2조)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제2항제10호 및 제14호, 제15호)
 - 공군 제3710부대장 및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

하고, 위촉직 위원이 퇴임 등에 따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것으로 봄

-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 세분화(안 제3조제3항)
 - 기존 총무담당·비상기획담당간사, 심리전담당간사를 포함 작전담당간사, 정보담당간사, 경찰담당간사, 예비군담당간사, 소방담당간사 신설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의2)
 -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되고,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사람으로 구성
 -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원에 부칠 안전의 사전 심의,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,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-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(안 제4조)
-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5조)
-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6조)

□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보낼곳 : 충청북도 안전정책과
(전화 : 043-220-2372, FAX : 043-220-2379 이메일 : budist@korea.kr)
-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
- 그 밖에 참고 사항